

2019. 5.8.~5.13. / 3일간

제3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 
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## 심사결과

| 의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        | 원안가결 |
|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            | 원안가결 |
|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          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     | 원안가결 |
|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| 원안가결 |
|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| 원안가결 |

## 주요내용

### 1.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9. 4. 30.
- 제안자 : 고재진 의원
- 제안이유  
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 -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
    - 행정자치위원회 : 환경위생과 신설 (안 제3조제2항제2호)
    - 산업건설위원회 : 환경위생과 삭제 (안 제3조제2항제3호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9. 5. 8.)

### 2.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- 제출일자 : 2019. 4. 30.
- 제안자 : 오원석 의원
- 제안이유  
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, 형식에 맞지 않거나 부정확한 표현, 오타자 등을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이해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
- 주요내용
  - ‘제1조(설립목적)’ 을 ‘제1조(목적)’ 으로 정정하고, ‘ 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’ 를 삭제
  - 제3조(의석배정) 제2항 ‘사무과장’ 을 ‘의회사무과장’ 으로 수정

- 제4조(개회식) 제1항 ‘의회는’ 을 ‘ ‘장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는’ 으로 수정
- 제5조(휴회) 제2항 ‘군수’ 를 ‘장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’ 로 수정
- 제22조(수정동의) 제1항 ‘연서’ 를 ‘함께 서명’ 으로 수정
- 제48조 제1항 ‘의회운영위원회’ 를 ‘의회운영위원회’ 로 수정
- 제74조(회의의 질서유지) 4항 및 제80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4항 ‘깍연행위’ 를 ‘담배 피는 행위’ 로 알기 쉽게 수정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8. 5. 8.)

### 3.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- **제출일자** : 2019. 4. 30.
- **제안자** : 심민섭 의원
- **제안이유**  
호적법 폐지(‘08.1.1.)에 따른 호적법 상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용어로 정비하고,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
- **주요내용**
  - 제1조(설립목적) ‘본적’ 을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 ‘로 정정
  - 제6조(장학금의 지급) 제1항 ‘금원’ 을 ‘금액’ 으로, 제2항 ‘장성군 출신으로’ → ‘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’ 로 바꿈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8. 5. 8.)

#### 4.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9. 4. 30.

▪ 제안자 : 이태신 의원

▪ 제안이유

장성군이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▪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
○ 운영·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·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 처리 가능

○ 사무 지원 및 준용 관한 사항(안 제4조)

· 통일자문회의장성군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 범위내 지원

○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· 협의회 회의 및 통일 행사에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적 사무 지원 가능

○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· 협의회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이용에 협조하도록 함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9. 5. 13.)

#### 5.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9. 4. 30.

▪ 제안자 : 김희식 의원

▪ 제안이유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

인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▪ **주요내용**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6조)
- 센터 조직 및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센터 정관, 임원,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2조)
- 센터의 지도·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~ 제14조)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9. 5. 13.)

**6.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**제출일자** : 2019. 4. 30.
- **제안자** : 장성군수(기획감사담당관)
- **제안이유**

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법인을 실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소재지(광주)와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함

▪ **주요내용**

- 정의 내용 변경(안 제2조제1항제4호)
  - ▶ (현행) 등록된 장성군에 소재한 법인
  - ▶ (개정)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성군을 관할하는 법인
- 시행계획 수립 : 삭제(안 제5조)
  - ▶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”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되지 않아 해당 조항 삭제
- 관계기관의 협조(안 제6조)
  - ▶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

에게 협조를 요청
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9. 5. 13.)

## 7.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

- **제출일자** : 2019. 4. 30.

- **제안자** : 장성군수(환경위생과장)

- **제안이유**

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완화로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(2017.12.29.공포, 2018.1.1.시행)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보완하여 정비 추진

- **주요내용**

-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- 영업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시설사용계약 시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(안 제7조)

- 푸드트럭존 표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(안 제9조)

-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(안 제10조)
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9. 3. 15.)